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 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¹⁾, 제32조(세금계산서 등)²⁾,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³⁾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⑧ “생략”

3)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 되었다.

가. 분할계약 및 계약처리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나 [표1]과 같이 분할계약 및 회계처리에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행을 할때에는 지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추가하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였다.

[표1] 분할구매 등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강사비	**,***,600		근로계약서
2	2022 ****	시상품	**,***,000	****	계약서 미작성
3	2022 ****	임차비	***,000	****	계약서 미작성
4	2022 ****	용품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5	2023 ****	시설 등	* ,***,000	****	계약서 미작성
6	2023 ****	전산프로그램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7	2023 ****	집기류 임차비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
8	2023 ****	현수막	* ,***,000	****	계약서 미작성
9	2023 ****	버스임차	* ,***,000	****	계약서 미작성
10	2023 ****	시설임차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
11	2023 ****	시설임차	** ,***,000	****	계약서 미작성, 분할계약

나.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미운영 등 관리 소홀

협회는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실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나 보조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하였다.

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깨끗한 보조금 집행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용품을 구매하면서 [표2]와 같이 적립금을 적립하고 영수를 증빙하였다.

[표2] 국도비 보조금 적립금 적립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3 ****	단복	* ,***,000	****	적립금(소**/**점)
2	2023 ****	간식비	*** ,***	****	적립금(김**/**점)

라. 집행 증빙서류 부실

협회는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지출하여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나 [표3]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였거나 추후 증빙서류를 보충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표3] 보조금 증빙서류 부실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숙박비	* ,***,000	****	숙박명단, 세부내역
2	2021 ****	방역용품	***,000	****	타견적서
		인건비	** ,***,600	****	자격증, 증빙
		대관료	* ,***,000	****	대관신청서, 증빙
3	2021 ****	방역용품	***,000	****	견적서, 타견적서
		현수막	** ,000	****	견적서, 타견적서
		숙박비	* ,***,000	****	숙박명단, 세부내역서
4	2022 ****	식비	* ,***,000	****	식비명단
		구급차	***,000	****	타견적서, 증빙사진
		단복	***,000	****	타견적서, 증빙사진
		임차비	** ,***,000	****	견적서, 임차계약서
		대관료	* ,***,000	****	견적서, 임차계약서
5	2022 ****	시상품	* ,***,000	****	견적서, 타견적, 증빙사진
		운영비	***,000	****	증빙사진
		다과	** ,000	****	증빙사진
		숙박비	***,000	****	숙박명단, 세부내역
		운영비	***,000	****	타견적, 증빙사진
6	2023 ****	시상품 등	* ,***,000	****	견적서, 타견적서
		초청장 등	* ,***,000	****	타견적서
7	2023 ****	응급의료	***,000	****	견적서, 자격증 증빙
8	2023 ****	숙박비	***,000	****	숙박견적, 세부내역
		숙박비	***,000	****	숙박견적, 세부내역
		숙박비	* ,***,000	****	숙박견적, 세부내역
		숙박비	***,000	****	숙박견적, 세부내역
9	2023 ****	메달 등	* ,***,000	****	전자세금계산서
		책자	* ,***,000	****	전자세금계산서

[조 치 사 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향후 회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감사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임원(감사)의 선임 절차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우수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 ‘20**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감사선임(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당일 **시 대의원(김**)과 박***(박** 세무회계사무소)을 각각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시 대의원(김**)을 행정감사로 재선임하였고, 회계감사의 경우 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22조제4항에서는 ‘감사’의 선임절차를 규정하였는데, 감사의 경우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와 회계감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 각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임기에 관하여는 「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회계감사의 경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5조제1항⁴⁾에 따라 연임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4)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현재 협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2인(행정감사 김**, 회계감사 박**)은 20**.**.**.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재임이 의결되었다. 20**.**.**. 개최된 ‘20**년 정기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을 확인결과 행정감사(김**)에 대하여는 총회 당시 재임을 의결하였으나,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현 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 선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의 경우 「규약」제22조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협회는 당시 총회에서 선임을 의결하지 않고 회장에 위임하였고, 20**년 現 임원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박** 동일인이 회계감사로 운영되고 있음을 미루어, 협회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지, 회장에 위임하여 내부적인 선임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협회는 규약 제22조제1항의 회장에 대한 임원 선임권한 부여의 범위를 규약에서 정한 부회장 및 이사로 한정한 것이 아닌 감사까지도 확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별도로 명문화되어진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감사’의 선임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치사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향후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감사)의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주 의 조 치

[제 목] 대의원총회 운영 부적정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당일 협회 대의원이 참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다. 그중 20**.*.*.*. 비대면으로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재적 **명 중 **명이 참석하여 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재적대의원 2*명 중 1*명이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우수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5항에서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규약」제7조 제6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을 협회 대의원으로 하게 하여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동조 제7항에서 명문화하여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대의원총회 구성 및 소집시 관련 「규약」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대의원의 대리인 총회 출석시 협회 통보 부적정

20**.**.*. 비대면으로 개최된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당일 재적대의원 2*명중 1*명이 참가하였고, 협회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증빙하기 위하여 ‘경기도우수협회 정기총회 줌회의 참여 확인사항’(이하 ‘확인사항’이라 한다)이라는 서식을 제작하여 참여 대의원의 소속과 대의원명, 참여여부 등을 포함한 확인증을 각 개별 대의원별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확인사항 확인결과 당일 참여한 1*명의 대의원중 **시우수협회(이**), **시우수협회(차**), **시우수협회(김**) 3명의 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나, 대리인 참석 관련 협회로의 통보건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대의원의 임원 겸직 제한

협회는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시 대의원(김**)을 행정감사로 선임하였고, 20**년 재임을 의결하였으며, 20**년 현재까지 협회 행정감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의원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규약」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인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해당 단체의 부회장중 1인을 추천받아 협회 대의원으로 하게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금번 정기종합감사간 확인결과 해당인은 협회 감사직무 수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의원으로써 총회에 참석하고 있고, 해당 총회의 성원 및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협회는 「규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의원과 임원의 중복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채 총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우슈협회 회장은

향후 대의원총회 개최시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의원과 임원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임원 선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대의원과 임원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現 행정감사에 대하여는 규약이 준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 공정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임원의 선임권한 위임 개선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 개최한 ‘20**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 당선된 現 회장(오**)에게 임원의 선임권한을 20**년까지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 개최한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심의안건으로 하여 20**년까지 임원의 선임권한을 회장에 위임하였으며, 20**.*.*.*. 개최한 ‘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20**년까지 임원의 선임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경기도우수협회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2조를 통해 임원에 대한 선임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나,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위임할 경우 차기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 제2항⁵⁾에서는 임원의 선임권한에 대하여 그 기한을 명시하였는데, ‘위임받은 이후 이사회 개최직전까지’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5)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또한, 협회 「규약」 제22조제5항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 제5항⁶⁾에서는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 발생시 보선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선임결과에 대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회를 개최하면서 회장에 임원선임권한을 매해 위임하였다. 연도별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 사유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충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원들의 갑작스런 개인사정 발생시 변동이 불시에 발생하므로, 보선 관련 임원의 선임권한을 해당연도부터 다음해까지 위임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협회 「규약」 제22조제1항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다만,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그 기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매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권한을 지속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관련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히 정한 경우'에 임원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인한 보선 필요가 포함되는 것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20**년부터 20**년까지 협회 임원현황 확인결과, 임원의 변동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변동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협회의 상황이 아닌 이를 근거로 매해 위임을 통해 관련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협회 행정편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히 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선임권한을 매해 위임하여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등 협회의 행정편의로 인한 임원 선임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련번호 : 5]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미흡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우수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2호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경기도체육회관에 입주한 종목으로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서류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고 기관과 공문서를 주고 받을 때는 ‘문서24’⁷⁾를 활용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도래시 첨부서류가 자동 소멸되어 기록물 보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PC에 보존하고 있으나 기능 고장 등으로 보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7) 행정·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그리고 보조사업별 서류철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묶음으로 서면 보관·관리하고 있어 기록물 관리에 미흡하고 수발신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부기관에서 어떤 내용이 수신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과도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우수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경기질서위원회, 심판위원회, 교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설치시 「규약」 제37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제37조제6항 및 제38조 제4항에 의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경기질서위원회, 심판위원회, 교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이상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협회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시 「규약」 제37조 제4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이 겸임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명 / 송**, 이**, 우**, 배**, 황**, 천**)의 경우 [표1]과 같이 위원회 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협회 「규약」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제외한 4개 위원회의 경우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 위원 구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표1] 협회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순	위 원 회 명	위 원 현 황	비 고
1	경기질서위원회		*명
2	스포츠공정위원회		*명
3	심판위원회		*명
4	교육위원회		*명
5	경기력향상위원회		*명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현재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 위원장, 용**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규약」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시 각 체육단체⁸⁾에 임원들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일부 위원의 경우 체육단체 임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협회 규약상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자격에 위배 된다 할 것이다.

8) 「경기도우수협회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우수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우수협회, 시·군체육회, 시·군우수협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 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대한우수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우수협회, 시·군체육회, 시·군우수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표2]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현 소속 및 직위

순	위원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조**	현	위원장
2	용**	현	부위원장
3	박**	현	
4	김**	현	
5	김**	현	
6	김**	현	
7	송**	현	

또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제2항⁹⁾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제3항¹⁰⁾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자격있는자를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 「규약」제38조제2항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의 경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성 절차의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도종목단체 규약이 본회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서로 정한 사항이 상이할 경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제1항¹¹⁾에 따라 본회 규정을 따라야 함이 타당하므로,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2.5.19.>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도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도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의 재검토를 통해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정한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협회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 구성의 부적정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회 「규약」,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사항 및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속기관] 경기도우수협회

[내용]

1. 업무개요

경기도우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은 「경기도우수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및 회계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규약」제40조(재산의 구분), 제41조(재원), 제42조(잉여금의처리), 제43조(재산의 관리),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제45조(회계연도),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47조(회계감사 등) 재산 및 회계조항을 두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국도비를 비롯하여 년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회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도 제정되어있지 않았고 회계관계 직원에 필요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

[조치사항] 경기도우수협회 회장은

회계와 관련된 협회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